

2013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제언

합리적 대안도, 국민의 기대도 충족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 01 2013년 세법개정안 총평
- 02 우리나라 세입구조에 대한 정부 인식의 문제점
- 03 세입구조 개선 방향 및 과제
- 04 반드시 주력해야 할 세법개정 Point

차례

| | |
|---------------------------|----|
| 2013년 세법개정안 총평 | 3 |
| 우리나라 세입구조에 대한 정부 인식의 문제점 | 4 |
| 세입구조 개선 방향 및 과제 | 6 |
| 반드시 주력해야 할 세법개정 POINT | 9 |
| 1) 법인세제 개편 | 9 |
| 2) 소득세제 개편 | 10 |
| 3)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 11 |
| 4)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 11 |
| 5)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12 |
| 6)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 13 |
| 7) 부동산세제 개편 | 13 |

2013년 세법개정안 총평

-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직접적 증세보다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종교인 과세 도입,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에 주력했음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등의 노력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법인세, 금융거래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분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였음
- 5년간 전체 세수증대 효과는 8.7조원, 공약가계부상 세입목표 달성하기엔 부족해
 - 지난 5월 3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에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134.8조원의 재원조달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 중 비과세 감면·정비로 1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함.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2017년까지 10.6조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증대 효과(EITC 제외)는 8.7조원으로 정부가 밝힌 목표와는 차이가 있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호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이번의 세법개정안에서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제개편은 부진한 반면, 근로소득자 위주의 개편으로 과세 불공평 초래
 -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고자 손쉬운 봉급생활자들 위주로 개편을 추진했다는 점, 이로 인해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홀 만에 핵심 내용을 수정해서 원안에서 후퇴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 점 등은 결국 민심도 잃고 합리적 대안도 추구하지 못한 정부의 폐착으로 귀결됨
 - 상대적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혜를 정상화하려는 대책은 턱없이 부진한 채, 소득세제의 부분적인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촉발함.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
- 야당 역시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비판한 점은 바람직하지 않음.
 - 야당은 예년과 달리 당론 차원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미루고 있음.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개혁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국회 모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 세입구조에 대한 정부 인식의 문제점

2013년 세법개정안에 나타난 정부의 인식은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일반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 재산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임

- <표 1>에서 보듯이 201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3.59%로 OECD 회원국 평균의 42.6%에 불과하지만, 법인소득세의 경우 3.48%로 OECD 회원국 평균의 120.0%에 달하고 있음
 - 재산세제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은 낮지만, 금융자본거래세의 비중이 높아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소비세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지만,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높은 수준
 -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의 74.5%에 달하지만,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회원국 평균의 47.1%에 불과한 수준

<표 1> 조세수입 구조(2010년)

(단위: GDP 대비 %)

| | 소득세 | | 재산세제 | | | 소비세제 | 사회보장기여금 | |
|---------|--------|--------|-------|---------|----------|-------|---------|------|
| | 개인 소득세 | 법인 소득세 | 전체 | 부동산 보유세 | 금융자본 거래세 | | 근로자 | 고용주 |
| 한국 | 3.59 | 3.48 | 2.86 | 0.79 | 1.80 | 8.50 | 2.39 | 2.49 |
| OECD 평균 | 8.42 | 2.90 | 1.77 | 1.05 | 0.42 | 10.96 | 3.21 | 5.30 |
| 한국/OECD | 42.6 | 120.0 | 161.6 | 75.2 | 428.6 | 77.6 | 74.5 | 47.1 |

주: 재산세제는 부동산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가세), 부유세, 상속세, 금융 및 자본거래세 등으로 구성.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 판매세, 관세 등으로 구성

자료: OECD, Statistics Database.

- 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이유
 -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 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높은 최고 과세표준, 고소득층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혜택,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분배분의 지속적 하락, 낮은 고용률 등도 영향
- 법인세 비중이 높은 이유
 -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로 인한 법인의 선호 등으로 과세대상이 크기 때문이지 개별 기업의 세 부담률은 결코 높지 않음
 -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이지만 기업들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수준이 매우 낮아 전반적인 총조세 부담수준은 낮은 편임. 더욱이 고용주가 부

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OECD 평균의 1/2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재산세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 보유세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거래세 비중이 높기 때문임
 - 2010년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은 OECD 평균의 75%에 불과

<표 2> 주요 국가의 최고세율 (단위: %)

| | 개인소득세 | | 법인세 | |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 사회보장기여금 | | |
|---------|-------|------|------|--------|------|---------------|---------|------|------|
| | 최고세율 | 배수 | 합계 | 국세 | 지방세 | | 합계 | 근로자 | 고용주 |
| 한국 | 41.8 | 10.6 | 24.2 | 22.0 | 2.2 | 10.0 | 18.2 | 8.1 | 10.1 |
| 일본 | 50.0 | 4.7 | 37.0 | 26.2 | 10.8 | 5.0 | 27.9 | 13.7 | 14.2 |
| 미국 | 41.9 | 8.4 | 39.1 | 32.8 | 6.3 | - | 19.3 | 5.6 | 13.7 |
| 영국 | 50.0 | 4.2 | 23.0 | 23.0 | 0.0 | 20.0 | 25.8 | 12.0 | 13.8 |
| 스웨덴 | 56.6 | 1.5 | 22.0 | 22.0 | 0.0 | 25.0 | 38.4 | 7.0 | 31.4 |
| 덴마크 | 60.2 | 1.1 | 25.0 | 25.0 | 0.0 | 25.0 | 8.0 | 8.0 | 0.0 |
| 독일 | 47.5 | 5.8 | 30.2 | 15.825 | 14.4 | 19.0 | 40.1 | 20.5 | 19.6 |
| 프랑스 | 50.7 | 5.1 | 34.4 | 34.4 | 0.0 | 19.6 | 55.3 | 13.7 | 41.6 |
| 그리스 | 49.0 | 6.0 | 26.0 | 26.0 | 0.0 | 23.0 | 45.1 | 16.5 | 28.6 |
| 이탈리아 | 48.6 | 10.4 | 27.5 | 27.5 | 0.0 | 21.0 | 42.6 | 10.5 | 32.1 |
| OECD 평균 | 42.5 | 4.2 | 25.3 | 22.8 | 8.5 | 18.7 | 26.8 | 9.9 | 16.9 |

주: 1)배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최초적용소득의 평균소득 배수임. 2)법인세 국세는 지방소득세 공제제도를 적용한 수치이며, OECD 회원국 중 8개 국가에서 법인세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함. 3)법인세(2013년)를 제외한 나머지는 2012년 기준. 4)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단일요율(flat rate)을 적용하는 국가는 단일요율을 최고요율로 간주. 2012년 현재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장기여금에 단일요율을 적용하는 OECD 회원국은 13개이며, 고용주 부담분의 경우는 14개임.

자료: OECD, Tax Database.

<표 3>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실효세율의 국제비교 (단위: %)

| | 개인소득세(2012년) | | | 법인세(2011년) | | | |
|---------|--------------|--------------|--------------|------------|------|-------|----------|
| | 개인 소득세 | 근로자 사회보장세 | 고용주 사회보장세 | 총실효 부담율 | 법인세율 | 사회보장세 | 기타 세율 |
| 한국 | 17.1 | 5.4 | 6.3 | 29.8 | 15.2 | 13.2 | 1.4 |
| 일본 | 15.2 | 13.1 | 13.8 | 50.0 | 26.9 | 17.4 | 5.6 |
| 미국 | 18.7 | 7.3 | 7.7 | 46.7 | 27.6 | 10.0 | 9.0 |
| 영국 | 24.1 | 7.3 | 12.2 | 35.5 | 22.2 | 10.2 | 3.1 |
| 스웨덴 | 36.3 | 0.0 | 31.4 | 53.0 | 15.7 | 35.5 | 1.9 |
| 덴마크 | 42.1 | 0.2 | 0.4 | 27.7 | 20.0 | 3.6 | 4.0 |
| 독일 | 28.3 | 15.5 | 14.8 | 46.8 | 18.9 | 21.9 | 5.9 |
| 프랑스 | 20.0 | 22.0 | 41.0 | 65.7 | 8.2 | 51.7 | 5.7 |
| 그리스 | 30.0 | 16.5 | 28.6 | 44.6 | 11.0 | 32.2 | 1.3 |
| 이탈리아 | 35.6 | 9.6 | 17.0 | 68.3 | 22.9 | 43.4 | 2.0 |
| OECD 평균 | 26.0 | 8.3 | 16.7 | 42.5 | 15.7 | 23.1 | 3.7 |

주 1)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세의 실효세율은 조세감면전 과세대상소득 대비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보장세의 비율로써 개인소득이 미화 10만 달러인 무자녀 독신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
2) 실효법인세율은 IFC와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중견기업(medium-sized firm)의 실효세율이며, 총실효부담율은 기업이윤 대비 조세와 각종 강제기여금의 비율.

자료: KPMG(2012),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The World Bank(2013)

세입구조 개선 방향 및 과제

1. 상위소득집단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세체계의 과세공평성을 높이는 세제개편 필요

- <표 4>와 <표 5>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감세혜택이 크게 나타남

- 2007년부터 2010년의 기간에 상위 1%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폭은 -1.6%로 평균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음. 반면에 하위 10%·20% 구간은 감세효과가 0으로 나타나 계층별로 편차가 드러남. <표5>의 조세감면 현황에서도 개인의 경우 19.7%(48.7조원), 법인은 93.4%(8.7조원)가 각각 상위 10%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

<표 4>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의 변화 (단위: %)

| | 근로소득세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증감 |
| 상위 1%내 | 22.5 | 21.5 | 20.5 | 20.9 | -1.6 |
| 상위 5%내 | 15.3 | 14.5 | 13.4 | 13.9 | -1.4 |
| 상위 10%내 | 12.2 | 11.6 | 10.7 | 11.1 | -1.3 |
| 상위 20%내 | 5.5 | 5.2 | 4.3 | 4.6 | -0.9 |
| 상위 30%내 | 0.4 | 3.3 | 2.5 | 2.8 | 2.4 |
| 상위 40%내 | 2.3 | 1.9 | 1.3 | 1.5 | -0.8 |
| 상위 50%내 | 1.4 | 1.3 | 0.8 | 0.9 | -0.5 |
| 상위 60%내 | 1.0 | 0.9 | 0.6 | 0.7 | -0.3 |
| 상위 70%내 | 0.7 | 0.7 | 0.5 | 0.5 | -0.2 |
| 상위 80%내 | 0.5 | 0.5 | 0.4 | 0.4 | -0.1 |
| 상위 90%내 | 0.3 | 0.3 | 0.2 | 0.3 | 0.0 |
| 상위 100%내 | 0.1 | 0.1 | 0.1 | 0.1 | 0.0 |
| 전체 | 4.9 | 4.6 | 4.1 | 4.4 | -0.5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국세청 자료(홍종학 국회의원의실 제공)

<표 5> 개인소득 및 법인소득 조세감면 현황(2011년) (단위: 조원, %)

| 소득 10분위 | 개인소득(과세미달자 제외) | | | 법인소득(흑자기업) | | |
|------------|----------------|--------|-------|--------------|----------|-------|
| | 소득비중 | 소득공제액 | | 흑자법인 소득비중 | 공제감면액 | |
| | | 금액(조원) | 비중 | | 금액(10억원) | 비중 |
| 상위 10% 이내 | 34.3 | 48.7 | 19.7 | 89.02 | 8,716.7 | 93.38 |
| 상위 20% 이내 | 16.7 | 43.1 | 17.4 | 4.34 | 312.8 | 3.35 |
| 상위 30% 이내 | 12.6 | 36.5 | 14.7 | 2.37 | 120 | 1.29 |
| 상위 40% 이내 | 9.9 | 30.1 | 12.1 | 1.64 | 116 | 1.24 |
| 상위 50% 이내 | 7.9 | 24.6 | 9.9 | 0.89 | 25.4 | 0.27 |
| 상위 60% 이내 | 6.3 | 20.4 | 8.2 | 0.55 | 12.1 | 0.13 |
| 상위 70% 이내 | 4.9 | 17.2 | 7.0 | 0.33 | 8.2 | 0.09 |
| 상위 80% 이내 | 3.7 | 13.9 | 5.6 | 0.20 | 2.2 | 0.02 |
| 상위 90% 이내 | 2.7 | 9.9 | 4.0 | 0.60 | 128.7 | 0.19 |
| 상위 100% 이내 | 1.0 | 3.5 | 1.4 | 0.07 | 0.2 | 0.00 |
| 전체 | 100.0 | 247.9 | 100.0 | 100.00 | 9,331.5 | 100.0 |

주: 개인소득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통합소득이며, 근로소득의 총급여와 종합소득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임. 통합소득에는 비과세소득과 과세미달자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음. 개인소득공제는 통합소득과 과세표준의 차액으로 산출했음. 법인소득의 10분위 분포는 각사업 연도소득 기준임.

자료: 홍준학 의원실,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감면액 100분위 자료, 2012.

2. 개발연대 시대로부터 비롯된 법인세제 특혜 축소하고 조세부담 강화 필요

-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금융 및 세계상의 지원정책을 배경으로 투자와 고용을 주도하였지만, 재벌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적 성장구조로 인해 고용창출력이 떨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은 심화
 - 부가가치 생산액 10억 원 당 취업자수는 1970년 156명에서 2012년 19.4명으로 감소.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인한다는 명분하에 낮은 법인세율을 고수
 -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외국인투자자의 이탈,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높은 법인세수 비중 등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주된 논거이지만,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는 이미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조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을 보면 2013년 현재 24.2%로 영국(23.0%)과 스웨덴(22.0%)보다는 다소 높지만, 일본(37.0%), 미국(39.1%), 독일(30.2%), 프랑스(34.4%)에 비해서는 크게 낮음. 또한 기업들이 부담하는 저수준의 사회보장기여금과 다양한 비과세감면혜택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총 조세비용은 크게 떨어짐.
 -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은 이윤 대비 29.8%로 OECD 회원국 평균(42.5%)은 물론 중국(63.7%), 일본(50.0%), 미국(46.7%), 독일(46.8%), 프랑스(65.7%), 스웨덴(53.0%) 등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임
-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 인화로 투자와 고용이 증가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음. 오히려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지 않아서 세수기반은 취약해졌음
 - 국세청의 연도별 법인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 공제감면 총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2%에서 2011년 71%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공제감면총액 9조 4,918억원 중 75%인 7조 1,063억원이 대기업에 집중되었음
 - 그러나 집중되는 혜택이 설비투자과 고용으로 이어졌는지는 미지수임. 2012년 전국 사업체 조사 잠정결과(통계청)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3,304개, 258만 4,430명으로 전년대비 0.9%, 0.7% 감소함. 2012년 10대그룹의 투자성향은 2012년 0.93으로 전체 대기업(1.11)보다 낮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09~12년 0.86)가 이전(03~08년 0.09)에 비해 더 낮아짐. 10대그룹의 투자여력(현금성자산/총자산)은 9.1%로 전체 대기업의 투자여력 8.2%보다 더 높음.

- 세계적인 불황속에서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결실이 경제주체들에게 고루 배분되도록 사회전체의 분배체계를 개선해야 함
 -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내수확대를 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비롯한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적극 취해야 함

3. 부동산 시장 변화에 걸맞는 세제 전반의 종합적인 개편 추구

-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의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부동산 거래세 인하·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세제혜택을 되풀이 할 경우 세수 결손만 초래하면서 그에 따른 정책적 효과는 얻기 어려움
 - 취득세 인화로 초래될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보전하게 될 경우, 감면 혜택을 보는 계층과 그에 따른 세부담을 저야하는 계층이 서로 달라 조세 형평성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
 - 현재 부동산 정책은 일시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구조적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 부동산 관련 세제 역시 보유세를 정상화하면서 거래세를 조정해 나가는 체계적인 방안 제시 필요

반드시 주력해야 할 세법개정 POINT

1. 법인세제 개편

-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12%,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6%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 조정
- 과표 최고구간 신설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라는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라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수정함. 현행 3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10%, 20%, 22%의 법인세율을 10%, 22%, 25%, 27%의 법인세율로 수정. 즉 아래와 같은 구간과 세율로 수정

[표 7]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 과세표준 | 2007년 세율 | 현행 세율 | 참여연대 개편안 세율 |
|-------------|----------|-------|----------------|
| 2억 원 이하 | 13% | 10% | 10% |
| 2~100억 원 | 25% | 20% | 22% |
| 100~200억 원 | 25% | 20% | 25% |
| 200~1000억 원 | 25% | 22% | 25% |
| 1000억 원 초과 | 25% | 22% | 27% |

-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개발세액공제 두 분야의 조세감면액 중 절반인 1조 7천억원이 10대 재벌집단에게 귀속되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이름을 바꾸어 사실상 부활하였음. 그러나 고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본 공제율을 두는 등 이 제도 역시 이름만 바뀌었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정책적 목표와 부합하지 않거나 정책적 효과가 미비했던 문제점들을 여전히 갖추고 있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기본 공제율 축소 및 대기업 등의 공제 대상 배제 등을 위주로 대폭 정비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R&D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음.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낮추었지만, 유망 서비스에 대한 R&D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가장 감면액이 큰 세액공제가 R&D개발비세액공제이고, 2012년 총 감면액은 2조 5천억원에 가까움. R&D 관련 세제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항목 폐지 등이 갖추어 져야 함.

2. 소득세제 개편

- 2011년 말, 정부와 국회는 3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한 최고세율 38% 신설
 - OECD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비율은 3.12배였음.
 - 2012년에 최고세율 과세표준이 기존의 8,8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비율은 10.65배로 상승했으며 최고세율 과세대상자는 13만 명에서 9,240명으로 감소. 부가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41.8%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임
- 소득세법 과표 구간 개정
 -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원 이하 3단계 구간은 그대로 두되, 상위 2구간인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3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8,8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구간, 1억 2,000만원 초과 금액 구간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수정하고, 최고세율도 38%에서 42%로 수정

[표 8] 개인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 과세표준 | 현행 세율 | 참여연대 개편안 세율 |
|-----------------|-------|----------------|
| 1억 2000만 원 이하 | 6~35% | 6~35% |
| 1억 2000만 원~3억 원 | 35% | 42% |
| 3억원 초과 | 38% | 42% |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 큰 틀에서 현행 소득공제 체계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소득세의 조세부담률을 올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과표양성화와 세수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와 병행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금융거래세, 부동산세 등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누진성을 강화하는 조치는 생략되어 중산층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바 있음.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의 로드맵

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연 3천만원 이상 상장주식 양도차액에 소득세 부과

- 상장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간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줄인다는 점에서 합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OECD국가들 중 대주주와 개인을 구분하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음.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 대상 및 범위를 유가증권시장에 한해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이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논의가 빠져있음. 조세정의 구현과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 3천만원 이상 상장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일반화함으로써 주식을 비롯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함. 단,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3천만 원으로 함.

4. 장내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 우리나라는 1995년 선물거래법의 제정으로 1996년 5월부터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거래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는 세제정책을 현재까지 유지
 - 2010년 기준 주가지수 선물시장 규모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 규모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특혜조치에 가까운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없음. 물론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어야 할 것이지만 증권거래세를 우선 부과
- 2013년 1월 22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주식 및 채권거래(0.1%), 파생금융상품 거래(0.01%)에 이와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도입 승인이 이뤄진 점을 참고할 필요 있음
 - 정부 역시 2012년 9월 28일 국회에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본세율을 0.01%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0~기본세율'의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전면 부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며, 거래세의 세율은 10000분의 1로 함.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함

[표9] 참여연대안과 정부안 비교

| | 참여연대안 | 정부안 |
|-------|--|--|
| 신설 내용 | ○과세대상 : 파생상품* *장내거래 선물·옵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세표준 : 약정금액(선물), 거래금액(옵션) ○세 율 : 0.01% ○납세의무자 : 한국거래소 ○시행시기 : 법 공포 후 6월 경 과한 날부터 | ○과세대상 : 파생상품* *장내거래 선물·옵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세표준 : 약정가액 ○세 율 : 0.01%* *대통령령으로 인하, 영세율 적용 가능 ○납세의무자 : 한국거래소 ○시행시기 : 2016. 1. 1. |

5.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정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위해 2011년 말 상속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수혜법인)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 1인에게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 그러나 과세 실현이 되기도 전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를 추진하여 편법적 부의 이전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적 목표를 스스로 희석시키고 있음

[표10]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정리

| | 2013년 세법개정안 |
|--------------------|-------------------------------------|
| 중소기업 과세요건 완화 | 지분율 3% → 5% 정상거래비율 30% → 50% |
| 기업내부거래 과세 제외 |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 |
|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 증여세 부과분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한 것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늘리면 총수의 재산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해 총수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오히려 과세의 실효성을 떨어트린 측면이 있음.
 - 2013년 1월 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증여로 간주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비율에서 30%를 공제하고 남은 거래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

-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50%로 공제 비중을 늘린 점은 재검토가 필요. 이미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완료된 만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마땅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 분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증여세 외에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었던 법인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확대했지만, 위반시 처벌 수위가 미약
 -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은 10억원이고 신고불이행시 과태료가 10%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경우 1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 달러 또는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미국은 최근 해외금융계좌신고제(FATCA)를 도입하여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미국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미국내에서 벌어들인 투자수익의 30%를 징수
- 참여연대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에 대한 특례를 두는 법안 제정을 제안
 -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정부가 역외탈세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회 보고, 투명한 세원 관리와 관련 정보의 획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제과세정보분석원 설치,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예술품, 선박 및 항공기, 법인의 출자지분 등을 포함한 해외재산 신고대상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강화,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조치, 역외탈세유 의자와 역외탈세유 의지역 지정 및 입증 책임 배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7.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세제 개편

-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 장기간의 저출산율, 기대수명의 증가 및 노령화 사회의 도래, 만혼 문화, 결혼기피현상에 따른 독신자의 증가와 같은 인구 구조적 변화와 부의 소수편중 및 중산층의 몰락, 저소득층의 증가 및 고착화와 같은 경제적 계층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큼.

- 부동산자산 가치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과거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하락 혹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간 시장을 주도해온 중대형 위주의 신규 매매수요는 감소하고, 소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임대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가 소유에서 임대시장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된 부동산 세제의 방향도 달라져야 함.
-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나 공평과세의 실현을 염두에 둔 구조적 개편보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그 목적이 있음. 토지 및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근본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거래세 완화 - 보유세 강화’ 라는 부동산 조세개혁의 방향에서 거래세만 인하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등 재산관련 세제 전반의 비전을 수립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나가야 함.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진행하되 속도 조절이 필요함. 현행 누진구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평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양도·임대소득세와 같은 소득과세는 민간임대시장을 공식화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누적크기에 따른 차등부과 방식으로의 전환하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임대 주택사업자 등록과 연계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임대소득 과세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함.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3-04호

2013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제언

발 행 일 2013. 12. 18
발 행 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강병구 교수)
담 당 신원기 간사 02-723-5052 wongi@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7001-060
주 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